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
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는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649호, 2025. 1. 7. 공포, 2025. 7. 8. 시행)됨에 따라,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·방법·절차(안 제13조 신설)

- 1)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도록 함
 - 서면·전자우편·전화·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
 -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
- 2)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경우,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알린 시기·방법 등을 보관·관리 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·방법·절차)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서면·전자우편·전화·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
2.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

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
2. 알린 시기
3. 알린 방법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<u>제13조(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 · 방법 · 절차)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.</u> <u>1. 서면 · 전자우편 · 전화 · 문자 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</u> <u>2.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</u> <u>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 · 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1.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</u> <u>2. 알린 시기</u>		

3. <u>알린 방법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7423